[별지 제2호 서식] 위임장(제9조제2항 관련)

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[별지 제2호 서식]

<u> </u>	I 0I	잣
Т		

위임하는 사람	이름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위임받는 사람	이름	생년월일	
	(서명 또는 인)		
	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	전화번호	
	주소		
민원사항	민 원 명	발급통수	용 도

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년 월 열

위임하는 사람

(서명 또는 인)

접수기관의 장 귀하

- ※ 1.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 - 2. 민원사항(출입국사실증명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사실증명, 납세증명, 지방세납세증명 등)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3. 서명은 작성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.
 - 4.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